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「하수도법」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한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”과 일치하도록 해당 조항 개정 (안 제26조)
: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948(2017.9.28.)〕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 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53807(2017.9.29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7.10.16. ~ 2017.11.6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 ~ ⑥ (생 략) ⑦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⑧ (생 략)	제26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⑧ (현행과 같음)